

고아저작물 활용을 위한 '상당한 노력'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에 관한 연구*

- 도서관의 대량디지털화를 중심으로 -

An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Considerable Efforts' to Use Orphan Works: Focused on Mass Digitization in Libraries

정 경 희 (Kyoung Hee Joung)**

목 차

- | | |
|-------------------------------------|------------------------|
| 1. 서 론 | 3. '상당한 노력' 규정 및 방법 분석 |
| 2. 도서관의 고아저작물 이용과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노력 | 4. 논의 및 개선안 |
| | 5. 결 론 |

초 록

저작권법 제50조 및 그 시행령 제18조는 저작권자를 찾기 어려운 저작물을 이용하기 전에 수행해야 할 '상당한 노력'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상당한 노력'의 기준을 도서관의 대량디지털화 프로젝트에 적용가능한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 통한 문서조회와 저작권찾기사이트를 통한 검색의 중복성, 정보통신망을 통한 검색기준의 모호성, 저작권등록부와 미분배보상금지작물 및 신탁관리저작물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식별번호에 의하여 관리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탁관리단체가 관리저작물을 저작권찾기사이트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검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표준식별번호에 의한 저작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ABSTRACT

Article 50 and article 18 related to orphan works in the Copyright Act of Korea and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of Korea define 'considerable efforts' to locate copyright owners. This study analyzed the reasonableness of the efforts for mass digitization in libraries.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the duplication of searches on the 'Finding Copyright' website and the inquire to copyright trust management organizations by document, ambiguity of search criteria through information networks, and problems due to non-use of international standard identifiers in managing works on copyright register, works with undistributed compensation, and copyright trust management organizat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copyright trust management organizations should register trust works, the government should develop a guideline for detail guidance for searching information networks, and copyright works should be managed using international standard identifiers.

키워드: 저작권, 고아저작물, 상당한 노력, 강제허락, 법정허락, 대량디지털화, 도서관

Copyright, Orphan Works, Diligent Search, Compulsory License, Statuary License, Mass Digitization, Library

* 본 연구의 일부(제3장 및 제4장)는 국립중앙도서관 위탁과제인 『도서관에서의 고아저작물 활용 및 서비스 방안 연구』(2015.12) 중 일부분을 발췌 및 수정하여 작성하였음.

**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부교수(khjoung@hansung.ac.kr)

논문접수일자: 2016년 10월 31일 최초심사일자: 2016년 10월 31일 게재확정일자: 2016년 11월 17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4): 333-350, 2016. [http://dx.doi.org/10.4275/KSLIS.2016.50.4.333]

1. 서론

2014년도까지 국립중앙도서관이 디지털화한 도서자료는 약 45만 책이며 이중 약 30만 건(67%)이 도서관보상금 부과대상 자료이다(정경희 외 2015). 따라서 이 자료들은 디지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도서관 내 혹은 저작권관리단체와 협약을 맺은 도서관 내의 지정된 컴퓨터에서만 볼 수 있다. 수치는 다를 수 있지만 국회도서관이 디지털화한 자료나 대학도서관 등에서 디지털화한 자료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렇게 디지털화된 자료 중 보상금이 저작권자에게 분배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그 대부분은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고아저작물이다.

고아저작물은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실령 알더라도 그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는 저작물이다. 고아저작물이 중요한 이슈가 된 것은 도서관이 소장자료를 대량으로 디지털화하면서부터이다. 도서관이 디지털화를 위하여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고자 하였으나 권리자를 찾을 수 없는 저작물들이 상당수에 이르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은 고아저작물 지침(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12)을 제정한 바 있다. 이 지침은 도서관 등의 문화유산기관이 저작권자를 찾기 위하여 일정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 이를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다. 저작권법 제50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를 찾는 노력을 기

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물론 도서관도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에 포함된다. 그런데 국내의 도서관이 디지털화한 다수의 저작물을 이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한 후 인터넷에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보인다. 하나는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 승인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와 이용허락 비용이 도서관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디지털화한 혹은 앞으로 디지털화하려는 자료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상당한 노력'의 기준에 맞추어 개별 저작물마다 저작재산권자를 찾아야 하는데 그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도서관의 디지털화 서비스가 도서관보상금 체제에서 벗어나 고아저작물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연구는 주로 앞서 언급한 첫 번째 이유 즉, 승인에 따른 비용의 문제 해결에 집중되었다(정경희 2014; 정경희 외 2015). 본 연구는 두 번째 문제를 다룬다. 즉, 저작재산권자를 찾기 위한 노력의 기준 소위 '상당한 노력'의 기준과 방법이 도서관의 대량디지털화에 적용 가능한 것인지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여기서 도서관의 대량디지털화란 도서관이 소장한 비디지털 자료를 비영리를 목적으로 디지털로 전환한 후 이를 인터넷 등에 무료로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상당한 노력'의 기준을 분석한다. 또한 저작권운영위원회의 권리자찾기 시스템이 이용자, 특히 도서

관의 대량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 찾기에 적합한 지에 대하여 분석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상당한 노력'의 기준에 대한 개정과 권리자찾기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의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2. 도서관의 고아저작물 이용과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노력

2.1 도서관의 대량디지털화와 고아저작물

저작권법의 목적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하여 그들의 저작물이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저작권법의 목적의 하나이다. 그 이유는 창작물이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는 환경이 또 다른 창작을 유도하는데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저작권법은 창작과 이용의 선순환으로 문화, 예술, 학문이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법이 창작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제한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저작권 보호를 일정한 기간으로 한정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저작재산권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특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비영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복지, 언론, 학문, 문화, 행정 등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권리 중 일부가 제한된다. 그 이유는 이러한 이용의 경우 권리자 개인의 재산적 이익의 보호보다 그 권리를 제한하여 이용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보다 가치 있다고 보기 때문이

다. 이와는 좀 다르지만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와 협상하여 허락을 받고자 하였으나 여하한 이유로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얻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강제허락(compulsory licensing)이라고 한다.

도서관을 비롯한 문화유산기관이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자료를 대량으로 디지털화하여 공개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고아저작물 역시 저작권자의 보호보다는 이용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가치 있다는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다.

고아저작물은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거나 설명 확인하였더라도 이용에 대한 허락을 얻기 위하여 연락을 취하고자 하나 그 권리자를 찾을 수 없는 저작물이다(Aplin 2010). 도서관이 소장자료를 디지털화하고 무료로 모든 사람에게 이를 공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권리자로부터 이에 대한 허락을 얻을 필요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권리자를 찾을 수 없거나 찾더라도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빈번해지면서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만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도서관이 온라인 공개 서비스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소송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거나 잠재적인 저작권 침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도서관이 대규모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추진할수록 더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European Commission 2011).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각 국가의 저작권법 규정, 각 국가의 문화유산기관의 디지털화 및 공개 방식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유럽에서는 이미 2012년에 회원국

가가 문화유산기관에서 고아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저작권제한 규정으로 입법화해야 한다는 지침을 제정하였고(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2012), 이에 따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EU 국가들이 각국의 법을 개정하여 이를 수용하였다. 미국은 저작권청에서 고아저작물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수차례 고아저작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에는 강제허락의 방식으로 고아저작물을 처리하고 있으나 이는 고아저작물 문제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있던 규정으로 문화유산기관의 대량디지털화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2.2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노력의 기준

고아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규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던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이 저작권자를 찾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고아저작물인 저작물은 없기 때문이다. 즉, 고아저작물은 특정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권리를 확인하고 그와 연락하려는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그것이 고아저작물임이 드러난다. 권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그것이 고아저작물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저작권법에 고아저작물 규정이 저작권제한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던 강제허락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던 누가, 어떻게 고아저작물임을 확인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이를 '상당한 노력'이라고 부르고 영미권에서는 '합리적인 성실한 검색'(reasonably diligent search) 또는 '합

리적인 검색 노력'(reasonable search effort)이라고 부른다. 고아저작물을 규정하는 하나의 방법인 강제허락은 기본적으로 거래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저작물의 이용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는 것이므로(임원선 2014), 이 규정을 통하여 검색과 처리,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로써 고아저작물을 이용하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Walker 2014).

일반적으로 성실한 검색을 위하여 제시되는 요건은 검색을 수행하는 주체, 검색의 성격과 범위, 검색대상이 되는 자원과 도구 등 세 가지이다(Hansen, Hinze and Urban 2013). 검색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는 다양하다. 미국의 2006년 고아저작물 보고서와 EU 고아저작물 지침에서 따르는 방식은 이용자가 권리소유자를 개별적으로 검색하는 것이다. 이 경우 권리소유자가 나타나서 법정에서 그 검색의 적정성을 다툰 때 이용자는 실제로 그 검색이 성실한 검색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검색을 한 후 중앙의 관리기관에서 이를 승인하거나 검토하는 방식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캐나다,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다. 또는 집중관리기관이 검색을 수행하는 방식도 있다. 이러한 방식은 각각 고아저작물 문제를 해결하는 저작권법 규정에 따른 차이이기도 하다. 즉, 저작권제한 규정의 통화를 통하여 문화유산기관 등 특정한 경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강제허락 규정을 두어 이용목적에 불문하고 누구든지 고아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저작권제한자의 권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저작권위탁관리단체가 위탁받지 않은 저작

물에 대해서까지 이용허락을 하도록 할 것인가에 따른 차이이기도 하다.

검색의 성격과 범위는 곧 어느 정도까지 검색해야 '성실한' 검색이 될 수 있는가이다. 이는 그 저작물 자체에 대하여 찾아낼 수 있는 정보의 양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컨대 저자명, 제목, 저작권 관리정보 등이 전혀 없는 저작물의 경우 검색에 대한 요구사항은 보다 낮아질 수 있다. 저작물이 공중에게 공개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 만일 어떤 저작물이 출판된 적도 없고 해당 저작물의 저자가 살아있다고 추정되는 경우 출판된 저작물이나 저자가 사망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보다 검색의 수위는 더 높아져야 할 것이다(Hansen, Hinze and Urban 2013). 또한 저작물 전체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최고 수준의 검색이, 반대로 비영리적인 교육 목적인 경우와 대량의 저작물에 대한 아카이빙 목적인 경우 가장 낮은 수준의 검색이 요구되어야 한다(Center for the Study of the Public Domain 2005). 저작물의 유형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 예컨대, 동영상이나 사진, 연설, 음악이 포함되어 있는 시청각자료처럼 복잡한 저작물은 한 가지 유형으로만 된 저작물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고 외국인 저작물에 대한 성실한 검색은 내국인과 다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Rosati 2013). 이 외에도 저작물의 창작년도와 공표된 날짜가 오래될수록 광범위한 검색에 대한 요구는 낮아져야 할 것이다(Hansen, Hinze and Urban 2013).

저작물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검색의 대상이 되는 정보원과 도구도 매우 다양하고 또 새로운 형태의 정보원이 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검색대상이 되는 정보원을 일일이 열거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검색기술의 변화를 감안하여 유연성과 확장성을 가지면서 성실한 검색의 대상이 되는 정보원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IFLA 2011).

그런데 대량의 고아저작물을 이용하려는 프로젝트의 경우 합리적인 검색노력의 기준보다는 오히려 어떤 저작물이 고아가 되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믿음 즉, 신의(good faith)라는 기준을 적용해야만 비용의 측면에서 수행가능할 것이다(Walker 2014). 요컨대, 소수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권리소유자를 찾기 위하여 다양한 고도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으나, 도서관이 대량으로 소장자료를 디지털화하는 경우에는 그 대다수가 고아저작물일 것이라는 합리적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 일반적으로 그 믿음은 해당 자료의 출판년도, 절판된 상황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성실한 검색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서 이 과정을 수행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소요될 경우 그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합리적인 성실한 검색에 대한 기준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수행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즉, 적절한 DB를 검색하고, 적절한 모범사례를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어떤 경우에는 검색이 짐이 되거나 시간이 소요되는 형태가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Center for the Study of the Public Domain 2005; Covey 2013). 심지어 문화유산기관의 상업적 이용에 대해서도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Library Copyright Alliance 2008). 그러나 유럽의 고아저작물 지침에 따라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에서는 성실한 검색을 위하여 이용해야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일부는 유료이거나 로그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문화유산기관에 부담과 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보고도 있다(Favale, Schroff and Bertoni 2016).

합리적인 성실한 검색이 어떻게 법률에 정의되어야 할지, 융통성과 엄격함 중 어떤 방식이 고아저작물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적합한지에 대한 합의는 없다. 도서관 단체는 융통성 있는 표준을 지지하는데 그 이유는 이용자 유형, 이용방법, 환경 등이 다양하므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할 경우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실한 노력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으면 도서관이 디지털화 노력을 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합리적인 성실한 검색은 비용, 이용의도, 저작물 유형, 출판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질 필요가 있으며(Council for the Library Copyright Alliance 2014), 특히 강제허락제도일 경우 검색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은 이 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기도 하다(Walker 2014).

성실한 노력이 어떤 수준이어야 적정한지 특히 대량으로 디지털화를 하려는 도서관에게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는 국내에서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저작권법에서는 고아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권리자를 찾는 노력을 '상당한 노력'이라고 부르고 이를 충족하는 요건을 저작권법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절차를 간략하게 하기 위하여 몇 번의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문제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확한 권리자 정보 DB를 구축하는 것과 신탁관리단체 관리 DB, 공공저작물 DB,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DB, 자유이

용사이트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보호기간 만료 저작물, 기증 저작물 DB등 저작물 권리 정보를 관리하는 통합 DB를 구축하거나 또는 보다 본질적으로는 저작권 등록이라는 형식요건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안효질 2012). 현재의 규정은 상당한 노력을 요구하고는 있으나 그 노력이 타당한 지를 판단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특히 현재의 규정에 따라 대량의 고아저작물의 권리자를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노현숙 2014). 그 이유는 현행 규정이 개별 저작물마다 상당한 노력을 이행해야 하므로 이 기준을 그대로 대량의 디지털화 프로젝트에 적용할 경우 지나치게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홍유미, 윤종민 2012).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결국 비용의 문제로 연결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성실한 노력에 대한 요구기준을 저작물을 이용하는 성격, 정도, 목적, 방법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노현숙 2014; 최나빈 2016).

국내에서 비록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간략하게 하는 법 개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서관 등의 문화유산기관의 비영리 목적의 대량 디지털화를 고려하며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에서는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당한 노력의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3. '상당한 노력' 규정 및 방법 분석

3.1 개정연혁

저작권법 제50조는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

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이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저작물이다. 이러한 저작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일정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용할 수 있다(법 제50조 1항).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저작권법시행령 제18조의 '상당한 노력의 기준'을 말한다.

이 기준은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05년 이후 10여 년 동안 몇 차례 개정되었다(〈표 1〉 참조). 우선 2005년도 저작권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승인을 위하여 일간신문 공고를 통해서만 권리자를 찾도록 한 것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승인신청 내용에 대한 관보공고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시킨 바 있다.¹⁾ 이

개정은 이용자가 권리자 불명인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신문공고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여줌으로써 이전 법 체제에서보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그리고 빠르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은 저작물의 권리자를 실제로 찾는 과정 자체를 쉽게 하거나 간략하게 한 것은 아니었다.

권리자를 찾는 노력이 조금 더 수월해진 것은 2012년도 법 개정에서이다. 즉, 2012년도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권리자찾기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고, 보상금 공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미분배보상금 관련 저작물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권리자찾기 시스템에 3개월간 공고한 후에는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별도의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다.²⁾ 그러나 미분배보상금 관련 저작물이 전체 저작물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이것이 실제로 이용자 각각의 상당한 노력을 수월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표 1〉 저작권법시행령 제18조 상당한 노력의 기준의 중요 개정 연혁

개정년월	개정이유	개정내용
2005. 12	- 이용승인절차 완화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 이용활성화	- 저작재산권자 확인방법 추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웹사이트) - 승인신청내용에 대한 관보공고기간 단축(30일에서 15일로)
2012. 4	- 이용절차 간소화, 국민불편 해소, 이용활성화 - 문화 및 문화산업발전도모	- 미분배보상금 관련 저작물에 대한 규정 도입 -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저작물 권리정보 보고 의무화 - 권리자찾기정보시스템 운영
2015. 7	- 이용절차개선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을 국민들이 쉽게 이용	-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요건 폐지 -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자 찾기 노력 수월 신설 - 시행령 제18조 2항에 따른 공고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 저작재산권자 찾는 공고 15일에서 10일로 단축

1) 저작권법 시행령[시행 2005.12.30] [대통령령 제19240호, 일부개정]
2) 저작권법 시행령[시행 2015.7.13] [대통령령 제26398호, 일부개정]

2015년도에는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승인을 위한 공고기간을 기존의 15일에서 10일간으로 또 한 번 단축하고, 미분배보상금 관련 저작물의 공고기간도 기존의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였다. 이들 공고기간의 단축은 2005년도의 개정에서처럼 권리자를 찾는 행위 자체의 편의성보다는 찾는 노력을 한 이후 이를 널리 알리는 기간을 줄임으로써 보다 빨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일을 다투어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에게는 이러한 개정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지기간의 단축이 저작권자를 찾기 위하여 들이는 노력 자체를 줄여주는 것은 아니다. 2015년의 개정에서 더 중요한 것은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한 가지 더 추가된 점이다. 즉,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자를 찾는 노력을 수행해야 한다는 조건이다(저작권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4).³⁾

이와 같이 그동안의 개정은 주로 권리자를 찾는 노력을 수행한 후 이를 공고하는 방법과 기간에 대한 것이었고, 2015년 개정에서 권리자를 찾는 노력의 기준이 하나 더 추가되어 오히려 그 기준이 좀 더 엄격해진 측면이 있다.

3.2 상당한 노력의 구체적 기준

현행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요구하는 저작권자의 거소를 파악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은 두 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첫째는 저작물을 사용하려는 이용자, 둘째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다. 먼저 저작물을 사용

하려는 이용자는 저작물의 권리자가 누구이며 살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즉, 연락처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네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저작권법시행령 제18조 1항). 첫째, 저작권등록부를 통하여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해야 한다. 저작권등록부란 저작권법 제53조 및 제54조에 의거하여 저작자가 자신의 실명, 공표 당시에 사용한 이명, 국적, 주소 또는 거소와 저작물의 제호, 종류, 창작연월일,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 및 공표연월일 등을 등록하거나 권리상속이나 일반승계 이외의 권리양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기재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등록사항에 대하여 공보를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55조 3항, 2008년 개정). 저작권등록부는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정보원이므로 권리자를 찾기 위하여 등록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다.

둘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를 통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을 위하여 우선,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하는 문서를 확정일자와 함께 보내야 한다. 이후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혹은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경우라면 저작재산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해당 저작물이

3) 저작권법 시행령[시행 2015.7.13] [대통령령 제26398호, 2015.7.13., 일부개정]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 관리업자가 없다면 이를 대신하여 저작권대리중개업자 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중 2명 이상에게 위와 같은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결국 이 경우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인다.

셋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권리자 불명인 저작물 등의 권리자찾기 정보시스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경우이다.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1. 저작재산권자를 찾는다는 취지, 2.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 등(알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저작물의 제호, 4. 공표 시 표시된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실명 또는 이명), 5. 저작물을 발행 또는 공표한 자, 6. 저작물의 이용 목적, 7. 복제물의 표지 사진 등의 자료(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8. 공고자 및 연락처(저작권법시행규칙 제3조)이다.

넷째, 국내의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검색하는 것이다. 이 요건은 2015년 7월 시행령 개정 시 도입된 것이나 국내의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제시되지는 않았다.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포털사이트에는 카페, 블로그, 각 기관의 DB, 신문 등 무수히 많은 유형의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검색결과로 나타나는 정보가 상당히 많을 것이고, 그 결과를 일일이 확인하며 권리자와 그의 소재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

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가 위의 네 가지 노력을 모두 수행한 후에도 저작재산권자를 찾을 수 없다면 이 때 비로소 그 저작물은 권리자미확인 저작물 즉, 고아저작물의 지위를 갖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의해서 수행되는 상당한 노력은 보상금이 부과되는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교과용도서보상금, 수업목적복제보상금, 도서관보상금 등 세 가지 유형의 보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법에서 정한 단체는 이들 보상금을 징수하고 분배하고 있는데 보상금을 분배한다고 공고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권리자에게 분배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의 노력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당한 노력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저작권법시행령 제18조 2항).

첫째, 저작권등록부를 통하여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하고, 둘째, 저작권위탁관리사업자가 보고한 사항 즉, 권리저작물 목록, 신탁, 대리 및 중개하는 저작물의 권리 정보를 통하여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하고, 셋째, 권리자찾기정보시스템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등을 공고한 날로부터 2개월 이상이 지났을 경우이다.

또한 비분배보상금 관련 저작물 이외에도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가 명확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의 세 가지 노력을 한 경우 상당한 노력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저작권법시행령 제18조 2항).

한편 이미 법정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될 때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하고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물론 승인신청이 전에 저작재산권자가 나타나 이의를 제기할

〈표 2〉 상당한 노력의 절차

수행주체 대상 및 절차	이용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고
대상저작물	- 공표된 내국인 저작물 중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가 명확치 않은 저작물	- 3년경과 미분배보상금 관련 저작물 -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가 명확하지 않은 저작물	
저작권 등록부를 통한 조회	-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신청을 통하여 저작재산권자 및 그의 거소 조회	- 저작권등록부를 통한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조회	- 저작권등록사이트에서 2005년 이후 등록저작물 검색가능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통한 조회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저작재산권자의 성명/명칭, 주소/거소를 조회하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 전달 후 회신 및 발송 후 1개월 경과	-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보고한 사항을 통한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의 조회	- 권리자찾기정보시스템에서 신탁관리업자 관리 저작물 중 일부 검색가능
저작권대리중개업자 및 그 외	- 관련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 저작권대리중개업자 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중 2명 이상에게 위의 절차 수행	- 해당사항 없음	
저작권자를 찾는 공고	- 전국 일간신문 또는 권리자찾기정보시스템에 공고 후 10일 경과	- 권리자찾기정보시스템에 공고 후 2개월 이상 경과	- 권리자찾기정보시스템에 공고
정보통신망 검색	- 국내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검색	- 해당사항 없음	

때는 그렇지 않다(법 제50조 3항). 개별 이용자가 수행해야 하는 상당한 노력의 기준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수행하는 상당한 노력의 기준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3.3 상당한 노력 수행 방법

3.3.1 저작권등록부 검색

2015년 11월 현재 저작권등록부에 등록된 저작물은 총 448,786건이다.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 전체 등록저작물의 약 56%이고, 그 다음으로는 미술저작물, 어문저작물이 많다(〈표 3〉

참조).

저작권등록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등록 사이트⁵⁾를 통해 쉽게 검색할 수 있다. 다만 등록된 저작물 모두를 검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문·미술 등 일반저작물의 등록부는 2005년 이후의 등록부에 등록된 저작물만 검색할 수 있다. 따라서 2004년 이전의 등록부의 열람·사본교부는 위원회를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 열람해야 한다. 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2004년 이전 자료를 사본신청할 경우 온라인 신청시 800원, 오프라인 신청시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⁶⁾

4) 대한민국정보공개(<https://www.open.go.kr>) 사이트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정보공개신청. (2015.11.22. 정보공개통지 2015.12.3.)

5) 〈<https://www.cros.or.kr/>〉(2015.11.30. 방문)

6) 대한민국정보공개(<https://www.open.go.kr>) 사이트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정보공개신청. (2015.11.22. 정보공개통지 2015.12.3.)

〈표 3〉 저작권등록부에 등록된 저작물(2015년 11월 현재)

저작물의 종류	건수	저작물의 종류	건수
어문저작물	37,898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50,336
음악저작물	12,661	편집저작물	20,057
연극저작물	375	2차적저작물	7,577
미술저작물	74,909	기타저작물	298
건축저작물	2,738	실연	252
사진저작물	18,248	음반	5,608
영상저작물	11,621	데이터베이스	605
도형저작물	5,580	등록부 미작성	23
계	164,030	계	284,756

향후 저작권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2004년 이전 등록저작물도 저작권등록사이트를 통하여 검색할 수 있게 되면 상당한 노력의 첫 번째 요건은 비교적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등록부는 성명, 제호, 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를 통해서 검색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소수의 저작물을 사용하려는 이용자에게는 문제가 없으나 대량의 저작물을 일시에 검색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3.2 권리자찾기정보시스템을 통한 검색

앞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이용자에 의한 것이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한 경우이든 저작권자를 찾는다는 공고는 권리자찾기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야 한다. 권리자찾기 정보시스템이란 저작권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권리자 불명인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찾기⁷⁾'라는 이름으로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다. 이 사이트를 통하여 저작재산권자를 찾기 위한 공고뿐만 아니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신탁저작물과 법정허락 승인 저작물을 확인을 할 수 있다. 아래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관리저작물

저작권법 105조에 따르면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⁸⁾ 또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관리저작물 목록을 도서나 전자형태로 작성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저작권법 제106조), 관리저작물을 저작권위원회에 제

7) <<https://www.findcopyright.or.kr/>>

8) 2015년 12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락을 얻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13개(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배급협회, 한국방송실연자연협회, 한국연론진흥재단, 한국문화정보원)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823개임. 대한민국정보공개(<https://www.open.go.kr>) 사이트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정보공개신청(2015.11.22. 정보공개통지 2015.12.3.)

출해야 한다(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0조). 이에 따라 저작권위원회에 접수된 저작물은 2015년 11월 기준 약 78만 건이다(〈표 4〉 참조). 이 저작물은 현재 저작권찾기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그러나 저작권찾기사이트가 국내 위탁관리업자의 모든 관리저작물에 대한 검색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위탁관리업자가 이 사이트에 등록된 관리저작물만 검색이 가능하다. 설령 제출의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탁관리업자가 등록하지 않은 저작물은 저작권찾기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없다.⁹⁾

그런데 이 사이트에서 위탁관리단체 관리저작물을 검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성실한 검색을 위한 두 번째 요건을 충족시켜주는 절차는 아니다. 단지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이 어느 권리단체에서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만일 찾고자 하는 저작물이 위탁관리단체의 저작물일 경우 해당 단체로부터 이용허락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 분야의 권리단체에 저작재산권자 확인을 위한 조회문서를 보내야

한다. 만일 저작권찾기사이트에서 위탁관리단체의 관리저작물을 모두 검색할 수 있다면 상당한 노력의 두 번째 요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저작물이 어느 단체에서 관리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 미분배보상금 관련 저작물과 기승인 저작물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하여 상당한 노력이 수행된 저작물 역시 권리자찾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분배보상금 자료와 이미 고아저작물임이 확인되어 법정허락을 얻은 기승인 저작물 및 그 외에 권리자를 찾을 수 없는 저작물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용자는 이 사이트를 통하여 이용하려고 하는 저작물이 발견될 경우 별도의 상당한 노력의 절차 없이 바로 이용승인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2015년 11월 현재 이 사이트를 통하여 바로 법정허락 이용신청이 가능한 저작물은 약 74만 건이며, 그 대다수는 미분배보상금 저작물이고, 그중 도서관보상금 미분배 저작물이 가장 많다(〈표 6〉 참조).¹⁰⁾ 그런데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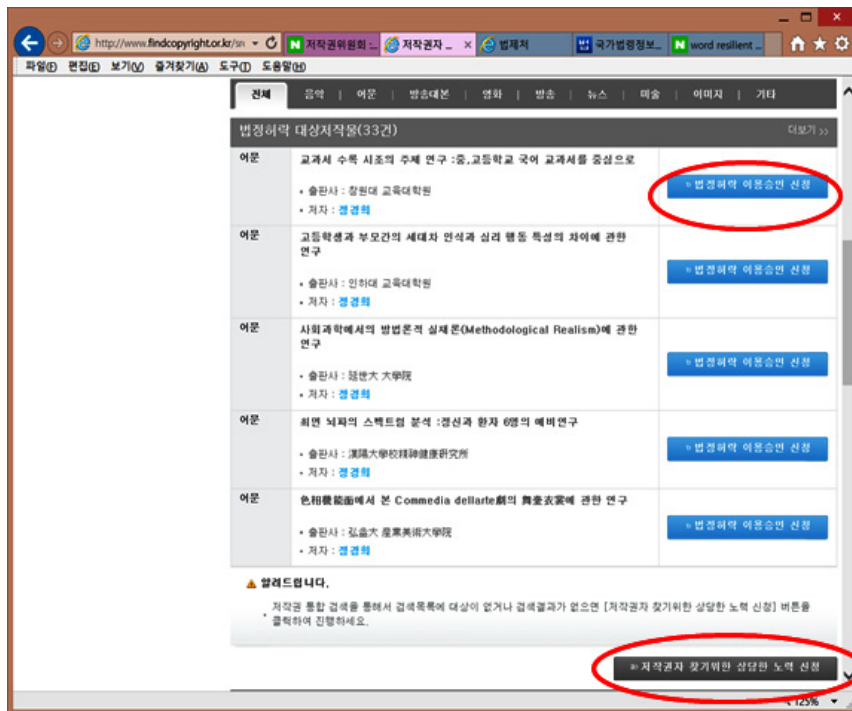
〈표 4〉 저작권찾기사이트에 등록된 위탁관리 저작물 현황

저작물 유형	저작물수(건)	저작물 유형	저작물수(건)
뉴스	1,593,700	방송대본	22,446
음악	1,372,217	영화	1,138
어문	464,052	방송	1,019
이미지	27,940	기타	4,282,889
미술	24,248		
합계 7,789,649			

9) 대한민국정보공개(<https://www.open.go.kr>) 사이트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정보공개신청. (2015.11.22. 정보공개통지 2015.12.3.)
 10) 대한민국정보공개(<https://www.open.go.kr>) 사이트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정보공개신청. (2015.11.22. 정보공개통지 2015.12.3.)

〈표 5〉 법정허락 이용승인 저작물

유형	미분배보상금 저작물수			기승인 저작물수	거소불명저작물수	합계
	방송음악	교과용	도서관			
저작물건수	26,745	310,334	402,356	117	15	739,567



〈그림 1〉 법정허락 이용승인신청 및 상당한 노력신청

는 전체 저작물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여전히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저작물이 대다수이다. 예컨대, 어문저작물이 대다수인 교과용 및 도서관미분배보상금 저작물을 합치면 약 71만 건인데, 이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국내도서 750만 건(2016년 10월 기준)의 약 9.5%에 그친다. 만일 국립중앙도서관이 장서 전체를 디지털화할 경우 소장자료의 약 90%에 대하여 상당한 노력을 개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검색결과 찾고자 하는 저작물이 없을 경우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하게 된다(〈그림 1〉 참조). 이러한 신청은 개별저작물 혹은 복수 저작물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대량의 저작물에 대한 상당한 노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사유 및 저작권자조회 공고 시 필요한 사항 등을 엑셀파일 1파일당 최대 50건을 정리하여 업로드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는 위원회가 상당한 노력 전체를 대행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찾기사이트를 통하여 이용자가 제대로 검색하지 못한 것을 위원회가 다시 한 번 검색해주는 서비스일 뿐이다.¹¹⁾

4. 논의 및 개선안

4.1 '상당한 노력' 기준의 문제

현행 저작권법시행령 제18조의 상당한 노력의 기준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가 저작물의 권리자를 찾기 위하여 저작권등록부를 확인하고 저작권위탁관리단체나 저작권중개업자를 통하여 권리자를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저작권등록부는 열람하고 조회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시행령 제18조 1항 1호)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대해서는 문서를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동조 동항 2호). 저작권법 106조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관리저작물 목록을 도서나 전자형태로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저작권법 시행령 제52조는 신탁관리업자가 매달 관리 저작물의 목록과 저작물의 권리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보고를 권리자찾기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할 수도 있다(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이에 따라 현재 저작권찾기사이트를 통하여 신탁관리단체가 보고한 관리저작물을 검색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권리자의 거소를 문서를 통하여 조회할 필요가

있는 것은 저작물찾기 사이트를 통하여 해당 신탁관리단체가 관리하는 저작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신탁관리하지 않고 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문서를 통한 조회를 의무화하는 것은 저작권찾기사이트에서의 검색과 중복되므로 불필요한 요건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이트를 통해서 신탁관리저작물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준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의 권리자찾기 시스템을 통한 보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권리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는 주체가 아니라 어딘가에 있을지 모를 권리자를 찾기 위하여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공지하도록 하는 것 또한 타당하다. 그 공지에 소요되는 기간을 계속 단축함으로써 가능한 고아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다는 것은 고아저작물 이용을 활성화 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다만, 상당한 노력의 마지막 기준인 '국내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하여 권리자를 찾는 것은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다. 특히 대량의 저작물에 대하여 이를 수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며, 개별적인 이용자의 경우에도 그 방대한 정보통신망의 정보검색도구 중 어느 것을 대상으로 권리자를 찾아야 할지 불분명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시행령 제18조 제2항 4호의 요건이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예컨대 '네이버', '다음', '구글' 등 포털사이트를 몇 개 제한적으로 또는 예시적으로 나열하고, 그 중 1개의 포털에서 저작물의 제호, 저작자의 성

11) 대한민국정보공개(<https://www.open.go.kr>) 사이트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정보공개신청. (2015.11.22. 정보공개통지 2015.12. 3.)

명 등으로 검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작자의 성명이나 그 거소 등을 찾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결과물을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다 구체화하여 검색의 시간과 비용을 축소시켜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저작권관리기관과 대량으로 고아저작물을 이용하려는 도서관 등이 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검색에 대하여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융통성있는 성실한 검색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어문저작물, 영화 및 음악저작물 등 저작물 유형별로 성실한 검색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바 있다. 시행령 제18조 제2항 4호의 모호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저작물 유형에 따라 검색해야 할 DB 및 웹사이트의 종류와 고아저작물을 이용하려는 목적의 영리성 여부, 이용하려는 기관의 성격에 따른 검색의 수위를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대량의 저작물을 디지털화하려는 도서관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 등 이미 기존에 디지털화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국가의 대표적인 도서관 또는 그 외에 이와 유사한 문화유산기관으로서 비영리적 목적으로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관 등과 음악, 어문 등 저작물 유형별 권리자단체가 공동으로 개발하되 가이드라인의 권위와 실행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주도할 필요가 있다.

4.2 대량의 고아저작물 이용을 위한 상당한 노력의 방법 개선

현재 권리자찾기 정보시스템에는 저작권등록부에 등록된 저작물, 신탁관리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 이미 법정허락이 이루어진 저

작물이 등록되어 있어 이를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다. 따라서 소수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를 찾기 위한 경우 이 시스템은 매우 유용해 보인다. 그러나 1년에 약 1만 건을 디지털화하고 있는 국내의 대규모 도서관 등의 경우에는 이 사이트를 통하여 일일이 해당 저작물을 검색할 경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량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 찾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작권찾기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저작물 DB와 도서관이 저작물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기관간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저작권찾기사이트에서 신탁관리업자가 저작물을 등록할 때 등록해야 하는 요소는 작성기관명, 기관내부관리ID, 저작물명, 저작물부제, 창작년도, 도서명, 출판사, 발행년도, 저작자명, 위탁관리구분이며, 도서관보상금 미분배 저작물은 작성기관코드, 기관내부관리 ID, 저작물명, 저작자명, 출판사, 발행년도, 분배공고년도, 분배여부이다. 또한 교과용도서보상금 미분배 저작물은 학교, 도서구분, 발행출판사, 교과목명칭, 권별구분, 학기구분, 출판년도, 저작물 종류, 이용페이지, 분배공고년도, 분배여부 항목을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다. 만일 도서관이 디지털화하려는 저작물과 저작권찾기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저작물을 일괄처리하면서 매칭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ISBN 등의 고유식별기호가 관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저작물에는 서명과 저작자명이 동일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므로 이들을 식별하기 위해서라도 저작물에 대한 고유정보가 관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결 론

지금까지 국내 저작권법 시행령에 규정된 고아저작물을 활용하기 위하여 이용자 및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상당한 노력과 그와 관련한 규정을 분석하여 도서관의 대량 디지털화 프로젝트에 적용가능한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문서를 통하여 저작권자를 조회하도록 한 것은 이미 저작권찾기사이트를 통한 검색과 중복되므로 문서를 통한 조회는 신탁되고 있음이 확실한 저작물에 대해서만 수행하도록 할 것과 최근 도입된 상당한 노력의 마지막 기준인 정보통신망을 통한 검색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므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예시를 통하여 제한하고 이해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검색해야할 사이트나 DB를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저작권찾기사이트를 통하여 검색할 수 있는 저작권등록부, 미분배보상금저작물, 신탁관리저

작물 등이 각각의 저작물 유형마다 제공되고 있는 국제적인 표준화된 식별번호에 의하여 관리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공공저작물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목표 아래 고아저작물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몇 차례 개정해 왔다. 그런데 여전히 이러한 개정은 개별적인 이용자들의 고아저작물 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오래전에 창작되었으나 가치 있는 저작물을 디지털로 변환하여 공공에게 공개하는 작업은 이제 세계 각국에서 일반화된 국가적 프로젝트이다. 주로 이러한 작업이 대규모 국가도서관과 대학도서관 또는 그 외 문화유산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도서관 등이 고아저작물을 디지털화하여 이를 널리 공개할 수 있도록 '성실한 노력'의 요건이 도서관이 수행 가능한 수준에서 요구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노현숙. 2014. 고아저작물 이용을 위한 선결과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아주법학』, 7(4): 345-374.
- [2] 안효질. 2012. 『권리자 미확인 저작물에 대한 관리 방안 연구』. 서울: 한국저작권위원회.
- [3] 임원선. 2014. 『저작권법』. 제4판. 서울: 한국저작권위원회.
- [4] 정경희 외. 2015. 『도서관에서의 고아저작물 활용 및 서비스 방안 연구: 법정허락을 중심으로』.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5] 정경희. 2014. 도서관보상금체제에서 고아저작물 체제로의 전환 모색.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4): 193-214.
- [6] 최나빈. 2016. 『고아저작물의 디지털화에 관한 법적 문제 연구: 도서관 내 대량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 [7] Aplin, T. 2010. "A Global Digital Register for the Preservation and Access to Cultural Heritage: Problems, Challenges and Possibilities." In *Copyright and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and Access to Works in a Digital World*. Cheltenham: Edward Elgar: 3-27.
- [8] Covey, D. T. 2013. *Response to U.S. Copyright Office NOI on Orphan Works and Mass Digitization*. Pittsburgh, PA: Carnegie Mellon University. [online] [cited 2015. 11. 30.] <http://repository.cmu.edu/cgi/viewcontent.cgi?article=1094&context=lib_science>
- [9] Center for the Study of the Public Domain. 2005. *Orphan Works: Analysis and Proposal*. Durham: Center for the Study of the Public Domain. [online] [cited 2015. 11. 5.] <<https://web.law.duke.edu/cspd/pdf/cspdproposal.pdf>>
- [10] Council for the Library Copyright Alliance. 2014. *Additional Comments of the Library Copyright Alliance to the Copyright Office's Notice of Inquiry Concerning Orphan Works and Mass Digitization*. Washington, DC: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online] [cited 2015. 11. 6.] <<http://www.librarycopyrightalliance.org/storage/documents/lca-additional-ow-comments-16may2014.pdf>>
- [11] Rosati, E. 2013. "The Orphan Works Provisions of the EPR Act: Are They Compatible with UK and EU Laws?" *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35(12): 724-740.
- [12] European Commission. 2011. *Impact Assessment on the Cross-border Online Access to Orphan Works*.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online] [cited 2015. 12. 15.] <http://ec.europa.eu/internal_market/copyright/docs/orphan-works/impact-assessment_en.pdf>
- [13]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12. *Directive 2012/28/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2 on Certain Permitted Uses of Orphan Works*. [online] [cited 2016. 9. 10.]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12:299:0005:0012:EN:PDF>>
- [14] Favale, M. Schroff, S. and Bertoni, A. 2016. "The Impossible Quest: Problems with Diligent Search for Orphan Works." [online] [cited 2016. 10. 1.] <<http://dx.doi.org/10.2139/ssrn.2806152>>
- [15] Hansen, D. R., Hinze, G. and Urban J. M. 2013. "Orphan Works and the Search for Rightsholders: Who Participates in a 'Diligent Search' under Present and Proposed Regimes?." [online] [cited 2015. 9. 16.] <<https://ssrn.com/abstract=2208163>>
- [16]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 2011. *IFLA Statement*

on Orphan Works. Hagu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online] [cited 2015. 10. 19.]

〈<http://www.ifla.org/publications/ifla-statement-on-orphan-works-2011>〉

[17] Library Copyright Alliance. 2008. *Proposed Amendments to Orphan Works Legislation*.
[online] [cited 2015. 11. 22.]

〈<http://www.librarycopyrightalliance.org/storage/documents/lca-ltr-s2913-orphan-works-amendments-17jun08.pdf>〉

[18] Walker, R. K. 2014. "Negotiating the Unknown: A Compulsory Licensing Solution to the Orphan Works Problem." *Cardozo Law Review*, 35: 983-1018.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1] Roh, Hyeonsook. 2014. "A Comparative Study on Utilizing Orphan Works." *Ajou Law Research*, 7(4): 345-374.

[2] Ahn, Hyojil. 2012.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Orphan Works*. Seoul: Korea Copyright Commission.

[3] Lim, Won Sun. 2014. *Copyright Law of Korea*. 4th ed. Seoul: Korea Copyright Commission.

[4] Jung, Kyoung Hee et al. 2015. *A Study on the Use and Service of Orphan Works in Libraries: Focused on the Statutory License*.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5] Jung, Kyoung Hee. 2014. "A Study on the Transition from the Library's Copyright Compensation Regime to the Orphan Works Regim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4): 193-214.

[6] Choi, Nabin. 2016.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n Digitization of Orphan Works: Focused on Mass Digitization in Libraries*. M.A. thesis, Department of Law,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Korea.